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신설 2023. 1. 19.>

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

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신청인	상호 또는 명칭 ㈜청지운수	
	대표자 성명 강 병 규	사업의 종류 마 을 버 스 (운행형태 : 노선형)
	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13 (전화번호 : 061-692-8278)	

예외 승인 신청 대상 노선	노선명 365-1	저상버스 운행 곤란 구간 (우실삼거리)정류소 ~ (모하)정류소
	저상버스 운행 곤란 사유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호하여 저상버스 하부 마찰가능성 도서지역으로 도로포장이 좋지 않고 급커브길과 과속방지턱이 많음	

검토 결과	[∨] 승인	[ ] 불승인
	불승인 사유	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
2023년 5월 26일

교 통 과 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